

의안번호	2209564
의 퇴 인	문진석 의원
회 답 일	2025. 7. 8.
추계번호	25B2083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(등급 규격 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) 신설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(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) 신설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(안 제1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1)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제1항2)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
-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,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지원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,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관련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5 예산
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 (3041-385)	농축산물 할인지원	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비용 할인 지원	108,000
	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	지역먹거리계획 수립·실행 지원,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·관리 등	7,490
	소계		115,490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(융자) (3039-311)	농산물직거래구매자 금지원 (농산물직거래구매 자금지원)	농산물을 직구매하여 소비자에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에 농산물 직구매 자금을 대한 융자 지원	11,800

- 1)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2. "농업재해"란 가뭄, 홍수, 호우(豪雨)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(異常低溫), 우박, 서리, 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 한파(寒波), 폭염(暴炎), 황사(黃砂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(病害蟲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, 유해야생동물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.
- 2)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(표준규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(축산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(이하 "표준규격"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 -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(이하 "표준규격품"이라 한다)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 -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,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5 예산
	농산물직거래구매자 금지원 (공공급식운영활성 화)	공공급식에 사용되는 국내산·지역산 우수 농축산물 소 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,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,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 로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 구매자금에 대한 용자 지원	15,000
	농산물직거래구매자 금지원 (친환경농산물직거 래지원)	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단체에 대한 직거 래 농산물 구매자금에 대한 용자 지원	20,520
	소계		47,320
농산물직거 래활성화지 원(보조) (3039-310)	직거래장터지원	비 상시적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인 직거래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·장치비, 운영비, 홍보비 및 교육비 등 지원	1,470
	직거래활성화 지원	직거래 홍보·교육 지원 및 농산물직거래 유통실태조사 수행 지원	420
	농산물신유통 경로확산	스마트스튜디오 운영,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, 농산 물 산지유통센터 온라인 직거래기반 육성,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등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기반조성 지원	3,321
	농식품거래소 지원	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기업간 거래 지원, 온라인 경매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	800
	꾸러미사업지원	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에 제품 상품화, 홍 보, 마케팅, 물류비, 교육비 지원	164
	소계		6,175
합계			168,98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농수산물 품
질관리법」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농산물로서 농림
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
위한 지원을 하도록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
정안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
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대상 농산물 선
별 기준,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방법,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계
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